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의 견 서

(문성호 의원)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입니다.

미래한강본부 소관 사안으로

교통위원회 문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09호,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한강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관리·점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제2항은 선박 안전의 지속적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와 내용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제7조 3항은 관할관청의 권한에 해당하는 관리, 감독권을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체계상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7조 제6항의 선장의 사고 보고 의무 역시 「선원법」 등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조례에 다시 명시할 경우 해석상 혼선의 우려가 있어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